

회 장 선 출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을 본 학회 정관 제12조 1항에 의거 회장선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의선출)

1. 차기회장은 현회장 임기만료년 정기총회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2. 회장선출방법은 선거권이 있는 임원 및 평위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1. 차기회장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 1인 및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 선관위는 선거일 60일전까지 구성토록 한다.

제4조(선관위 업무)

1.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회장후보의 자격)

1. 회장후보의 자격은 학회 임원을 역임하고, 본 회의 정회원으로 7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평위원 20명이상 추천을 받은 자는 위의 1항에 관계없이 회장후보의 자격을 갖는다.

제6조(후보자 등록)

1.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는 선거일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가. 선거권이 있는 임원 및 평위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 나. 후보자의 약력 1부
 - 다. 후보자의 소견 1부

제7조(후보자 등록 공고)

1.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약력과 소견을 선거일 10일전까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선거권자의 자격)

1. 임원 및 평위원은 선거권이 주어진다.
2. 평위원의 선거권은 선거 90일전까지 발전기금을 납부한 평위원에게 부여한다.
3. 선거권자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9조 1항의 열람기간 동안 받아 선관위에서 검토하여 선거권 부여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제9조(선거인 명부작성)

1. 선관위는 선관위의 일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7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임원 및 평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선거일정)

1. 선관위는 차기회장의 선출시기, 장소 및 절차를 선거일 10일전까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임원 및 평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투·개표관리)

1. 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관위 위원장이 정하고 투표용지에는 학회직인이 있어야 한다.
2. 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되 명기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며 기표란을 둔다.
3.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기표실을 두어야 한다.
4. 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5. 개표시 각 회장 후보자가 위임한 2명이하의 회원이 참관할 수 있다.
6.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투표를 불확실하게 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7. 개표기록 및 집계록에는 선관위 위원이 서명, 날인하고 선거종료 즉시 이사회에 선거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한다.

제12조(선출방법)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2. 후보자가 1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
3. 선관위는 회장당선자를 정기총회에 공고하여 인준을 받아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